「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6월 7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 : 2019년 6월 10일 회부

○ 상정일자 : 제24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6월 1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위생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생활폐기물로 지정된 폐소화기(생활폐기물 분류번호 91-19-00)를 『폐기물관리법』제14조에 의거 적정처리 하기위해 「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」의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○ 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10조 제2항의 별표3 「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」에 폐소화기 추가.

- 대형폐기물(폐소화기) 처리 수수료 (단위:원)

| 구분 (kg당) | 3.3kg이하 | 3.3kg초과~19kg이하 | 19kg초과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처리가격 | 2,000 | 5,000 | 10,000 | |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○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폐소화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고, 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,

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#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#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(제10조제2항 관련)

| 품목별 | 규격 | 부과금액(원) |
|---|---|---|
| 가전제품류(17품목) | | |
| 냉장고 | 500ℓ이상 | 8,500 |
| | 300ℓ이상 | 7,000 |
| | 300ℓ미만 | 6,500 |
| 세탁기 | 모든규격 | 5,500 |
| 탈수기 | 모든규격 | 3,500 |
| 청소기 | 모든규격 | 2,000 |
| 가습기 | 모든규격 | 1,000 |
| 다리미 | 모든규격 | 1,000 |
| 팩스기기 | 모든규격 | 2,000 |
| 에어컨 | 264m²이상 | 8,000 |
| | 66m²이상 | 7,000 |
| | 66m²미만 | 5,000 |
| 텔레비전 | 42인치이상 | 8,000 |
| | 12인치이상 | 5,000 |
| 오디오 | 대형 | 5,000 |
| | 소형 | 3,000 |
| 컴퓨터 | 일반형 | 3,000 |
| | 노트북 | 1,500 |
| 스피커 | 높이1m이상 | 5,000 |
| | 높이1m미만 | 3,000 |
| 온풍기 | 264m²이상 | 8,000 |
| | 66m²이상 | 7,000 |
| | 66m²미만 | 5,000 |
| 난로 | 33m²이상 | 4,000 |
| | 33m²미만 | 3,000 |
| 가스오븐레인지 | 높이1m이상 | 5,500 |
| | 높이1m미만 | 3,000 |
| 전자레인지 | 모든규격 | 2,000 |
| 선풍기 | 모든규격 | 1,500 |
| 가구류(16품목) | | |
| 장롱 | 120cm 1쪽 | 15,000 |
| | 90cm 1쪽 | 10,000 |
| 응접세트 | 장의자 | 7,000 |
| | 의 자 | 5,000 |
| 식탁 | 6인용 이상 | 7,000 |
| | 6인용 미만 | 6,000 |
| 밥상 | 4인용 식탁 | 2,000 |
| | 4인용 미만 | 1,500 |
| 싱크대 | 길이 2m이상 | 7,000 |
| | 길이 2m미만 | 5,000 |
| 책상 | 양수, 대형 | 7,000 |
| | 편수, 소형 | 6,000 |
| 책꽂이 | 모든규격 | 2,000 |
| 침대목재 | 2인용 | 5,000 |
| | 1인용 | 3,000 |
| 매트리스 | 2인용 | 5,000 |
| | 1인용 | 3,000 |
| 의자 | 모든규격 | 2,000 |
| 장식장 | 5단 이상 | 8,000 |
| | 5단 이하 | 6,000 |
| 화장대 | 모든규격 | 6,000 |
| 문갑 | 모든규격 | 5,000 |
| 서랍장 | 5단 이상 | 6,000 |
| | 4단 이상 | 5,000 |
| 옷걸이 | 모든규격 | 2,000 |
| 신발장 | 모든규격 | 4,000 |

| 품목별 | 규격 | 부과금액(원) |
|---|---|---|
| 생활용품류(9개품목) | | |
| 필통 | 모든규격 | 3,000 |
| 벽시계 | 대 형 | 2,000 |
| | 중소형 | 1,000 |
| 인형류 | 모든규격 | 1,000 |
| 장난감류 | 모든규격 | 1,000 |
| 가방 | 모든규격 | 1,000 |
| 액자 | 길이 1m이상 | 1,500 |
| | 길이 1m미만 | 1,000 |
| 진열대 | 길이 1m이상 | 5,000 |
| | 길이 1m미만 | 3,000 |
| 캐비닛 | 모든규격 | 6,000 |
| 피아노 | 업라이트 | 11,000 |
| | 그랜드 | 15,000 |
| 기타(15개품목) | | |
| 창문 | 목재(쪽당) | |
| | 대형(높이1.5m이상) | 3,000 |
| | 중형(높이1.0m이상) | 2,500 |
| | 소형(높이1.0m미만) | 2,000 |
| | 새시(쪽당) | |
| | 대형(높이1.5m이상) | 4,000 |
| | 중형(높이1.0m이상) | 3,000 |
| | 소형(높이1.0m미만) | 2,000 |
| 일반문 | 목재(쪽당) | 3,000 |
| | 새시(쪽당) | 4,000 |
| 수족관 | 대 형 | 12,000 |
| | 중 형 | 8,000 |
| | 소 형 | 4,000 |
| 거울 | 높이1m이상 | 5,000 |
| | 높이1m미만 | 3,000 |
| 자전거 | 성인용(2발) | 3,000 |
| | 아동용(2발) | 2,000 |
| | 아동용(3발) | 2,000 |
| 유모차 | 모든규격 | 2,000 |
| 깨진유리 | kg당 (마대에 담아 배출) | 500 |
| 항아리 | 대형 | 2,000 |
| | 소형 | 1,500 |
| 세면대 | 모든규격 | 3,000 |
| 변기통 | 모든규격 | 3,500 |
| 장판 | kg당 | 500 |
| 카펫 | kg당 | 500 |
| 목재 | kg당 | 500 |
| 플라스틱류 | kg당 | 500 |
| 폐소화기류 | 3.3kg이하 | 2,000 |
| | 3.3kg초과~19kg이하 | 5,000 |
| | 19kg초과 | 10,000 |

※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를 준용한다.